

<2021년 연말정산자료준비 주의사항>

☞ 국세청 최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상 1월중순부터 조회예정이며, 가능한 직원별로 PDF파일로 저장하셔서 메일(jwn@kr-sv.com)로 2022년 1월 31일(일)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☞ 2021년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, **종(전)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.**(누락한 경우, 근로자가 5월달에 **직접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!!!**)

☞ 2021년도중 근무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공제, 신용카드등 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시에 위 **근무한 월만** 체크해서 저장해주셔야 합니다.

☞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옆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(배우자, 자녀 등 관계요건에 해당하나, 연령이나 소득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만 옆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!!!)